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

파주시 월롱면, 파주읍, 문산읍 일원에 위치한 평화경제특구 예정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며,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5일

파 주 시 장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면적

- 위치 : 파주시 월롱면, 파주읍, 문산읍 일원(파주 평화경제특구 예정지역)
- 면적 : 6,878,437㎡

2. 제한기간

-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간 (※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고시할 경우 해제)

3. 제한대상 행위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
 - 건축물의 건축(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) 또는 공작물의 설치
 -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)
 - 토석의 채취
 - 토지분할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)
 - 녹지지역 ·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
4. 제한대상 제외 행위

-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
-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
-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해 종전 규모범위 내 건축허가(신고)
-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되었거나,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- 기타 경미한 개발행위로서 시장이 행위제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

5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

- 열람기간 : 2026. 8. 25. ~ 2026. 9. 8.(공고일로부터 14일간)
- 열람장소 : 파주시청 평화경제과 / 월롱면·파주읍·문산읍 행정복지센터
- 제출방법 :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면 제출
- 제출내용 :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

6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(안)



※ 위 도면은 위치 파악을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.

7. 관계도서 : 열람장소 비치(게재 생략)

8. 문 의 처 : 파주시청 평화경제과(☎031-940-2976)